

평생교육의 장이 열린다

개정될 학칙초안을 알아본다

정부가 의지는 교육개혁의 물결이 우리학교 학칙에까지 밀려왔다. 사문화된 학칙을 재검토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행되고 있는 학칙개정은 학생들의 대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학칙개정안을 보면 입학시, 입학자격, 입학시험, 편입학자격, 편입학과 재학생들에게 적용될 재학년한, 재입학, 전과, 유급등의 학칙이 개정된다.

우리 신문에서 교무회의의 승인을 거친 학칙개정안의 내용과 우리학교 학칙중 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 저해의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자신이 원한다면 평생동안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될 것 같

다. 교수도 아닌 직원도 아닌 대학생으로 말이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재학년한 규정으로 인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학칙이 변경된다면 가능하다. 또한 학사경고로 제적되었거나 재학년한을 초과해 제적된 학생들도 다시 캠퍼스로 돌아올 수 있다.

학칙개정준비중

이렇게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는 학칙개정이 준비중에 있다. 지난 6월 발의된 학칙개정안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현재 총장의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총장의 승인이 끝나면 바로 시행된다. 빠르게 이번 학기부터 개정된 학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교무과 손백현 주임은 '대학내에서의 평생교육실현 차원에서 학칙개정 작업이 이루어진 것이며 이번 학칙개정으로 학생

들이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정될 학칙은 입학사기, 입학자격, 입학시험, 편입학자격, 편입학등에 대한 것인데 재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을 이수하지 못하면 학적을 박탈하도록 하는 제7조는 삭제된다. 또한 재학년한 초과, 3번 연속 성적경고, 유급에 의해 제적되었을 경우 재입학 자격을 주지 않았던 학칙 제15조는 해

원의 20%범위까지 허용되며 전과 후에도 종전에 재학한 년한과 상관없이 재학할 수 있다. 학사경고와 더불어 학생회와 학생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으로 손꼽히는 재학년한

재학년한 폐지될 것으로 보여

성적경고 제적자도 재입학 가능해

자유로운 학생활동 위한 학칙개정 필요

적용될 학칙들은 재학년한, 재입학, 전과, 유급등이다.〈표창조〉

재학생 적용학칙

학칙개정안에 따라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6년의 재학년한(휴학, 군입대제외)동안 전과정

당학과 심사를 거쳐 학장의 추천을 받으면 제적 사유에 상관없이 재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과에 대한 학칙도 바뀌어 현재보다 쉽게 전과를 할 수 있게 된다. 여석이 있을 때만 허용되던 전과가 학과별, 학부별 또는 계열별 입학정

의 폐지는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입학 조항 개정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아직 학사경고 제도가 남아있고 학칙 제67조를 보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

망이 없는 자 △학력이 열등하여 성업의 희망이 없는 자 △본 대학교 명예를 훼손하여 학생 본분에 위배된 행동을 한 자는 해당 대학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69조에서는 징계처분으로 제적된 자의 재입학과 편입학을 금지하고 있다.

평생교육실현

학사경고조항의 경우, 지난 88년 폐지되었다가 91년 정원 식문교부장관 봉변이후 정부지침변화로 다시 부활된바 있고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볼 때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는 학사경고·제적 제도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아직 우리학교에서는 무리한 학칙적용으로 인한 마찰이 없는 상태지만 연대 사태이후 교육부가 각 대학에 '대학 학생제 대책'을 시달해 엄격한 학칙적용을 요구한 후 연대의 대자보 사건, 각 대학의 언론사 탄압 등이 있었던 것을 본다면 정부의 요구가 강해졌을 때 사문화되다시피한 이런 학칙들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평생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학칙개정이 그 의의를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내에서의 자유로운 학생활동을 위한 학칙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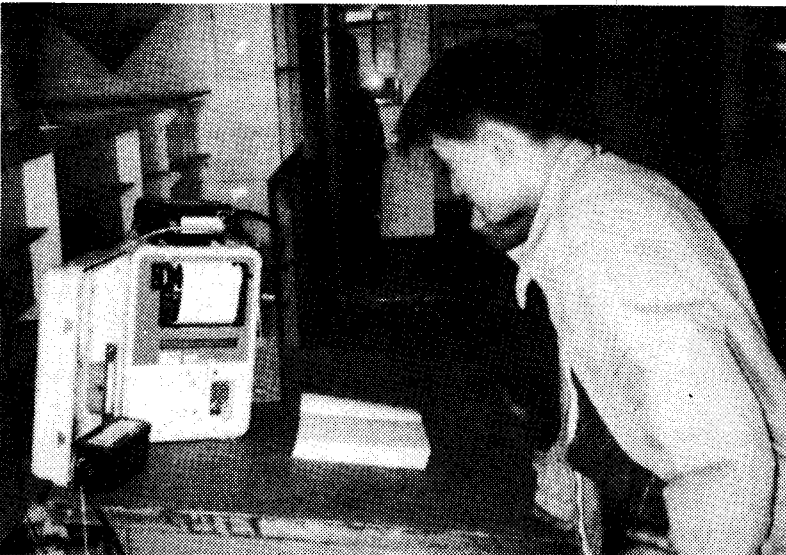
〈박기람 기자〉

〈학칙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7조(재학년한) ① 각 대학의 재학년한은 수업년한의 1배반으로 한다. 그러나 전입학자의 재학년한은 본 대학교에서 (재입학자는 재입학후) 수업하여야 할 년한의 1배반으로 한다. ②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학적을 상실한다. ③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학년한) 삭제
제15조(재입학자격) 제적된 자는 해당학과 심사를 거쳐 학장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단, 학칙 제34조 제4호 제6호 및 유급에 의거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1995.3.1 개정)	제15조(재입학자격) 제적된 자는 해당 학과의 심사를 거쳐 학장의 추천을 받아 재입학 할 수 있다.
제23조(전과) ① 전과는 제3학기 초부터 제5학기초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사를 행할 수 있다.	제23조(전과) ① 전과는 제3학기 초부터 제5학기초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전과는 제3학기 초부터 제5학기초에 한하여 여석이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24조(전과와 자격) ① 전과는 전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할 전과목 및 교양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7조 제4항에 의거하여 휴학, 어학, 수학, 과학 또는 예능특기자로 입학한 자는 전과할 수 없다. (1995.3.1 신설)	제24조(전과와 자격) ① 전과는 해당학년 전 학기까지 이수하여야 할 교과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 동
제25조(전과와 허가) 전과를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소속학과장, 학장 및 전입학 학과장, 학장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이수년한) 전과한 자의 재학년한에 관하여는 종전에 재학한 년한을 통산한다.	제25조(전과와 허가) 총장은 전출입 학과장 및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이수년한) 삭제
제29조(휴학자의 지위) 휴학자는 휴학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휴학자의 지위) 휴학자는 휴학 중 학적을 보유한다.
제34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대학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경과후 소정기간 내에 이수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타교에 입학한 자 4. 재학년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 전과정의 이수를 필하지 못한 자 5. 질병, 기타 사유로 학업의 성업에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6. 성적경고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받은 자	제34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소속대학장의 제의에 의하여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좌 동
제36조(유급) 학업성적이 매우 불량한 자에게는 학력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급을 시킬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996.2.29 개정)	제36조(유급) 삭제

우리학교 산학협력 현황

'산추위' 제2도약의 디딤돌



▲산학기술연구원 중 건설 및 환경기술연구센터 모습

우리학교는 매년 산업체, 국가기관 및 출연 연구소와 협력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지난 9월 수원캠퍼스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산학협력

추진위원회(위원장·조창환 부총장)가 구성되었다. 산학협력 차원의 기구는 지난 93년 기업환경의 국제적 변화와 기술보호주의에 대처하고 산학연 협동연

구를 수행하여 신 기술개발과 지역 사회의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수원캠퍼스에서 산학기술연구원(원장·박경석 기계공학과 교수)이 개원한 바 있다. 이 산학기술연구원은 산학연 지역 컨소시엄 센터, 건설 및 환경기술 연구센터, 기계설계 기술센터, 생산

되어 있다.

또한 산학기술연구원은 지역 사회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산학 협력을 통한 연구 수행 산업체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산업 기술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학술회의와 강연 및 학술지의 간행을 통한 학술 활동, 교수 및 학생들의 산업체 실

이렇게 볼때 산학협력은 학교와 산업체 양자간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순수한 연구만이 아닌 경쟁력을 갖춘 기술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실상 산학협력의 주축은 공대교수들로 구성된 '산학협력기술원'이었다.

연구센터 구성으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

기술개발 넘어 여러분야로 눈 돌려야

시스템 연구센터, 섬유시스템 연구센터, 소재공정 연구센터, 에너지기술 연구센터, 소재공정 연구센터, 에너지기술 연구센터, 전자기술 연구센터, 전자기술 연구센터, 컴퓨터 응용 연구센터, 환경디자인 연구센터, 차세대 자동차, 부품개발 연구센터 등 모두 12개의 연구센터로 구성

무 경험 기회 제공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행해 왔다.

주로 공대 교수들로 구성된 이 연구원은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1차년도(93년 9월~94년 8월)에는 17과제, 2차년도(94년 8월~95년 8월)에는 18과제, 3차년도(95년 9월~96년 8월)에

이번 '산학협력 추진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산학협력은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뿐만 아니라 기업체 장학금 유치, 산학협력 건설공사 등 여러 분야를 통해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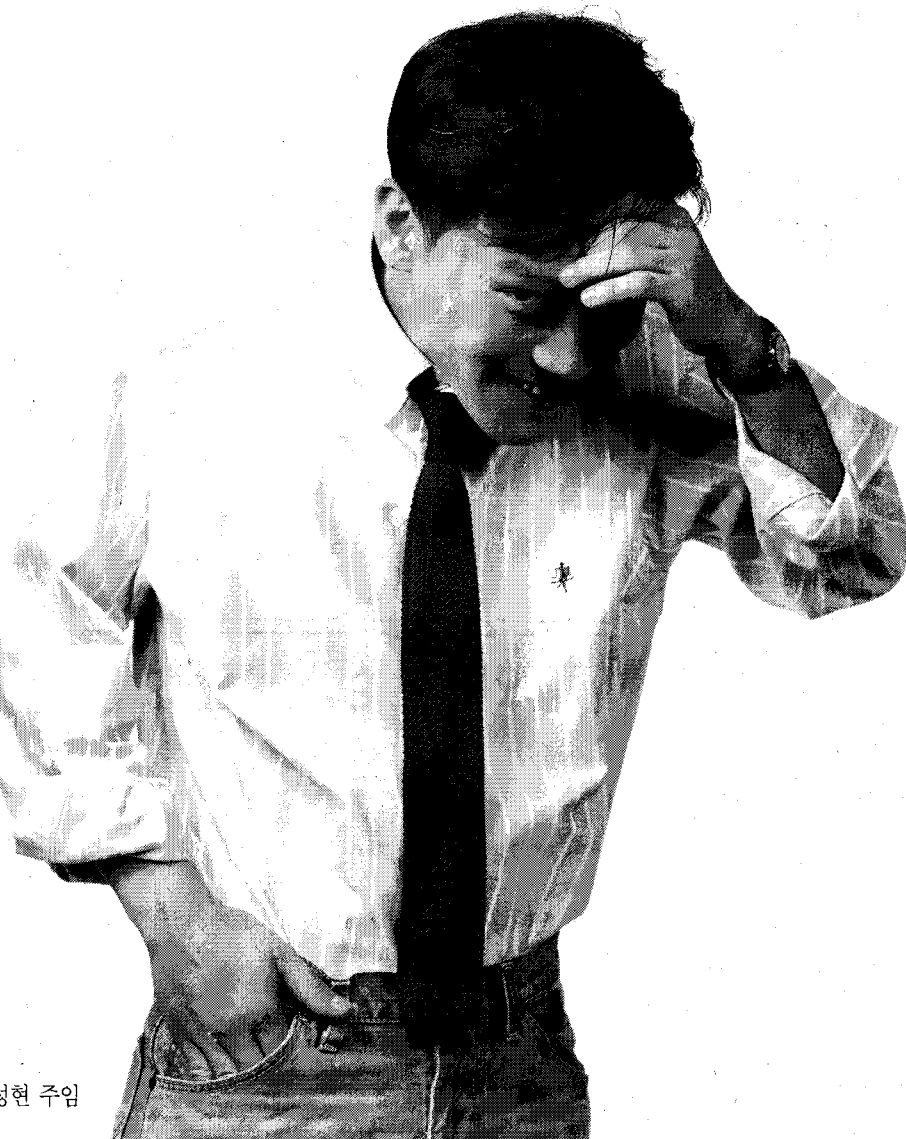
〈공광섭 기자〉

고려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삼성화재 스타지오펜 활동보고서 (1)

“보고드릴 게 없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삼성화재 스타지오펜! 작년3월, 김성현 씨는 “자동차사고의 원인 및 유형”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출경비까지 자신의 책임하에 집행하며, 사무실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1년을 결산하는 지난 2월, 김성현 씨는 보고할 게 없었습니다. 연구주제는 너무나 방대했으며, 그에 비해 1년은 너무나 짧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성현 씨는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도 김성현 씨의 지난 1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괜찮고, 실적이 없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 스타지오펜! 삼성화재는 1년동안 자율적인 체제를 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더라도 창조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스타지오펜 김성현 주임

제1회 사고예방논문 현상공모

응모자격 대학·대학원생(전문대 및 박사과정 포함) 및 산업체 해당분야 종사자

응모접수마감 1997년 1월 20일(월요일)

응모부문

- 건축·토목부문의 사고예방 ● 화학Plant부문의 사고예방
- 각종 제조산업에서의 화재예방

응모대상

응모부문과 관련하여 전문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현실적인 위험관리 기술논문

응모방법

A4지 50매 이상 (논문요약 2매 추가)

당선작 발표

1997년 2월 24일 개별통지

접수처

우편번호 100-191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87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선발 및 시상내용

(총 시상금: 2,100만원)

구분	선발	시상내용	비고
대상	1편	대표이사표창, 격려금 500만원	500만원
우수상	2편	대표이사표창, 격려금 300만원	600만원
입선작	5편	대표이사표창, 격려금 100만원	500만원
장려상	10편	각50만원 상당의 상품권	500만원

기타

-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작의 원고에 대한 모든권리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 응모시 응모부품, 이름, 소속,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작품은 미발표작이어야 하며, 당선작이라도 표절이나 기발표작으로 밝혀질 경우 당선은 취소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TEL: 02-775-0484 ~ 7)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

SAMSUNG

삼성화재